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권의 도입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임용현(2018491002)

< 목 차 >

- I. 서론 :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III.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 IV. 해외사례(EU기본권헌장, GDPR 등을 중심으로)
- V. 맺음말

I. 서론 : 개인정보보호와 기본권

오늘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알린다면 언제,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전달할 것인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념은 자기에 관한 사항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개인의 인격적 가치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 개념, 국내·외 법제, 판례 등을 살펴보고 헌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자적인 기본권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박영사, 2016, p.60.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는 많은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에서 출발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유형의 정보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정보가 아닌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보호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실익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대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정의한 후, 법적으로 정의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대해 규율하는 형태를 띤다.

국내의 법제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식별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²⁾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³⁾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개인정보보호 : 규제체계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정책적 과제)』, 박영사, 2016, p.22.

3)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pp.8-11.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 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

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한다.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리다면 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00기업 평균연봉’, ‘00대학 졸업생 취업률’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17 판결)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

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본 것이다. 만약 다른 결합 가능 정보가 일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

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현재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정보

만으로도 정보주체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5)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입수 가능성’은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합 가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6)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로서 이러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 제58조의2에 규정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와 다르다. 또한, 가명정보와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는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인 제2조제1호나목의 개인정보와 구분된다.

추가 정보란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쓰인 수단이나 방식으로서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다른 정보와 추가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면 처리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는 정보 모두가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지만, 추가 정보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로 제한된다. 또한, 추가 정보는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 전 정보로 되돌릴 수 있는 정보(복

원(復元)할 수 있는 정보)인 점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정보와 구분된다.

(7) 가명처리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의2).

가명처리의 기술이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가명정보(가명처리 된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리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제대로 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일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다른 정보로 대체하였으

나 해당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가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8) 익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서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익명정보로 규정하고, 익명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1980년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EU 회원국의 입법기준이 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1995), 이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으로 대체]을 참고하였고, 우리나라가 제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APEC 프라이버시 원칙(2004)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참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 준다.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비교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GDPR 제5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1원칙)	▪ 데이터 최소화 (1.c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 정확성(1.d항)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3항)
▪ 목적 명확화의 원칙(3원칙)	▪ 목적 제한(1.b항)	▪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 이용제한의 원칙(4원칙)	▪ 저장기간 제한 (1.e항)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 안전성 확보의 원칙(5원칙)	▪ 무결성과 기밀성 (1.f항)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6원칙)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1.a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7원칙)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 책임의 원칙(8원칙)	▪ 책임성(2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목적 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세탁서비스 제공자는 세탁완료를 알리거나 세탁물을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으나, 그밖에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입력시 입력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오류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

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기록에서 개인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익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⁴⁾

4) 상계서, pp28-29.

3.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통해서 확립된 것이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이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2018)으로 대체] 상 정보주체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삭제·폐쇄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권리, 개인정보가 직접 판매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자동처리정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 시행 중이던 정보통신망법은 동의철회권,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舊)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과 정정 및 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범위 등의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 등의 의무를 진다(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30조, 제39조의3제1항 등 참고). 이 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의무를 진다(법 제39조의8 참고).

(2)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형식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22조 등

참고).

(3)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제공·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법 제35조 참고). 열람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처리정지·정정·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법 제36조, 제37조 참고).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철회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법 제

39조의7제1항 참고).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5)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입증책임의 전환(법 제39조제1항 단서 참고), 분쟁조정제도(법 제40조~제50조 참고)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법 제51조~제57조 참고),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제3항 참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의무(법 제39조의9 참고) 등을 도입하고 있다.

(6) 권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는 국방, 경찰, 수사, 재판, 조세 등을 위한 공권력의 발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조사, 저장, 제공, 공개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할지라도 그 법률은 반드시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

를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 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는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통계법, 전자정부법, 공직자윤리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⁵⁾

5) 상계서, pp31-33.

3.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 개념

(1) 개인정보통제권

개인정보통제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처리, 관리, 이용되는지에 대한 감독권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정보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을 그 내용으로 포섭할 뿐만 아니라 정보가 원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정보에 대한 소극적 침해 배제나 적극적 접근 및 수정권의 보장을 넘어 개인정보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요구하고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권력 및 사회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⁶⁾

즉, 개인정보통제권은 자유로운 인격성의 보장을 위한 측면과 권력통제권이라는 정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동

6)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인터넷 법률 2001』 제4호, pp.36-37.

시에 가지는 복합적 권리로 파악되어야 하고 그 헌법적 근거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인격성의 보장을 위한 측면은 기존의 이론들, 판례나 입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근거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은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⁷⁾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

7) 상계논문, pp.43-44.

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통제 내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의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내용을 스스로 형성한다는 의미가 아닌 자신에 관한 사항을 남에게 알릴지 말지, 알린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알릴 것인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

다.8)

(3) 자기정보통제권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정보통제권 신설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12670)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의미한다(개정안 제22조 제2항 참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강화하는 취지로 개정안 제22조 제2항에 자기정보통제권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에서 살펴본대로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정보자기결

8) 권건보, 전거서, pp.60-61.

정권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기정보통제 권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개인정보보호권

개인정보보호권이란 자기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관련 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즉, 개인정보보호권은 소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관한 정보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적극적 측면이 강조된다.⁹⁾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제공, 이용된 문제되는 정보가 민감한 정보일 필요도 없고 그 처리과정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즉, 개인정보보호

9) 문재태, 「개인정보보호권의 실현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12, pp.92-94.

권은 사생활보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사생활영역에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또는 정보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과 관계없이 개인정보 처리시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¹⁰⁾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 개념의 본질이 ‘통제’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위 기본권의 개념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관한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 기본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구현될 수 있는 권리이다. 전통적인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동의의 매커니즘을 바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정보주체

10) 정애령,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6, p.60.

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른바 ‘동의 만능주의’의 부작용으로 형식적인 동의 절차로 인해 오히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는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유형으로 개인정보가 나타나고 그 처리 방식도 현재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동의’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보주체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기본권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AI, 빅데이터 등 급격한 ICT 환경의 변화 및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개인정보 그 자체만으로도 보호받을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분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보호권’은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배경 및 입법 목적

(1) 제정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배경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¹¹⁾

(2) 연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섭하는 개인정보보호

11)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전게서, p.3.

일반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안(민노당, 04.11), 이은영 의원안(우리당, 05.7), 이혜훈 의원안(한나라당, 05.12) 등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이혜훈 의원안(08.8.8), 변재일 의원안(08.10.27) 등 2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08년 11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09년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개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상정하였고 이후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11년 3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2차례의 주목할만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나는 2015년 7월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다른 하나는 2020년 1월 개정된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 도래하였으나, 기존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

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 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3)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²⁾

12) 상계서, p.6.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문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은 두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혼란을 주고 중복규제의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이 법과 다른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한

해서만 소관 법률에 예외규정이나 특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³⁾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었으나, 2020년 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로 이관되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온라인을 통해 수집

13) 상계서, p.35.

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법 개정 이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으로 편입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의 내용과 신용정보법의 적용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념을 일반 상거래 기업을 제외하는 취지로 합목적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신용정보법은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상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 상거래 기업의 오프라인 상의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의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제1설]과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기관 및 일반 상거래 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해서는 특별법

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는 입장[제2설]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정된 현행 데이터 3법의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정합적인 규제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와 그 배경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개인정보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던 규제의 중복과 모순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산업계와 금융계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원래 의도한 가치와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향평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행위 단체소송,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한편, 다른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취지상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하면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III.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한 사례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이렇듯,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원인 프라이버시권이나 행복추구권은 모두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기본권이고, 사법의 영역에서는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기된 개인정보의 침해에 관

한 소송을 보더라도, 원고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인격권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법원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경제·사회 활동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순수하게 인격적 이익만 보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영리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14) 상계서, pp.30-31.

IV. 해외사례(EU기본권헌장, GDPR 등을 중심으로)

1.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으로서 EU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라 한다) 제16조와 EU기본권헌장(Charter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FREU'라 한다) 제8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일반입법절차에 따라서 연합기관, 기구, 사무소와 에이전시에 의한 그리고 EU법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의 회원국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와 관련되는 규정과 그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들 규정의 준수는 독립적 기관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도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에 관한 개

인정보의 보호권을 가진다”고 하여 EU기능조약(TFEU) 제16조 제1항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러한 정보는 특정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관계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또는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 관해 수집된 정보에의 접근권과 그것을 정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에서는 “이들 규정의 준수는 독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EU기능조약(TFEU) 제16조 제2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약이나 헌장의 관련조항이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¹⁵⁾

15)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에, 2016, pp.13-14.

2. EU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

EU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라 한다) 제1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본 규칙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특히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3항에서는 “연합 역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의 보호와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GDPR은 ‘자연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U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일반적으로 위 두 가지 가치, 즉 ‘자연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양자는 자칫 상호충돌하기 쉬운 가치이지만, GDPR은 양 가치의

중요성이 동등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EU개인정보보호법은 EU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그 ‘이동’도 또 다른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하에서는 GDPR의 성립배경,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상계서, pp.16-17.

3. GDPR의 성립배경 및 목적

(1) GDPR의 성립배경

ICT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공유와 수집의 양이 종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그런데 EU 회원국들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 등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EU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시행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¹⁷⁾

(2) GDPR의 목적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규

17) 상계서, p.113.

정”(제1조 제1항)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특히 개인정보보호권을 보호”(제1조 제2항)하는 것과 “EU 역내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제1조 제3항)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GDPR 전문 제1항에서는 GDPR이 EU기본권헌장(CFREU) 제7조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8조에 규정된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본권을 이행하고, EU기본권헌장(CFREU) 제8조 제1항과 EU기능조약(TFEU)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⁸⁾

18) 박노형 외 8인, 『EU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2017, p.4.

V. 맺음말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은 EU의 GDPR 시행과 함께 각 국의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으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헌법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독

자적인 기본권 도입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본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권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헌법 제10조·제17조·제37조 제1항으로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할 경우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위축되고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 등의 기본권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를 기본권적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의 범위, 활용 및 처리방식 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본권의 도입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아닌 개인정보의 포괄적인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앞서 살펴본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헌법상 ‘개인정보보호권’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학수 외 20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에, 2016.

박노형 외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2017.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해설』, 2016.

-국내논문-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법무부 인터넷 법률 2001』 제4호, pp.23-44.

문재태, 「개인정보보호권의 실현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2012, pp.87-122.

정애령,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6, pp.51-80.

관련자료 목록

-단행본-

함인선, 『EU개인정보판례』, 마로니에, 2018.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2012.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 방안 연구』, 2017.

-인터넷자료-

김현아, “4차산업혁명 대비한 ‘헌법’은? ‘개인정보보호권’ 담자”, 이데일리, 2017.9.11.,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16059136&mediaCodeNo=257>